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 33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연월일 2006년 7월 20 일

발 의 자 이수정 의원 외 9 인

1. 제안이유

-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2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2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는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의회는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게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(이하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.)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” 로 하고 동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(이하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” 를 “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감사) ①	의회는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	제2조(감사) ①	의회는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본회의의 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(이하 "감사위원회"라 한다.)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.	
②	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(이하"감사위원회"라 한다)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	②	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	